

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월 25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월 6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김정걸)

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2조)

나.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(안 제4조)

- 라.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바. 의견의 반영 규정(안 제8조)
- 사.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(2022. 1. 13. 시행예정)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 의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1. 11. 17. ~ 2022. 12. 7.) 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,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사항을,
- 안 제7조에서 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8조에서는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, 의견 제출권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
- 기존의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등 주민의 제한적 참여만 가능했으나, 이번 조례안은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¹⁾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

1) ※ 의견검토 절차



통보해야 하고,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것임.

- 이는 주민 스스로 행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으며,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지방자치법」 (2022.1.13.시행)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

-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「전자정부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전자문서”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.

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(법정민원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,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,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·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